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5. 8. 28.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8월 14일

나. 발의자: 이순우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5년 8월 21일

라. 상정일자: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8. 26.)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순우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여성가족부에서는 육아 참여 남성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기저귀 교환대 등이 남녀 화장실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을 발표함. 이러한 정부 기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차별 없는 육아 공간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성별에 관계없는 양육 환경 문화를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등 설치기준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 개정 배경 및 취지

-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더불어 남성의 육아 참여 비율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회 변화에 비해 공중화장실의 육아 편의시설 확충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특히 공중화장실 중 여성화장실에는 기저귀교환대가 비교적 보편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남성화장실에는 설치 비율이 낮아 남성이 단독으로 영유아를 동반해 외출할 경우 기저귀 교환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음.
- 이에 2010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남녀 구분 없이 공중화장실등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 최근 여성가족부는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사업에 대해 ‘자가 진단형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진단 항목에는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남녀 화장실 모두에 기저귀교환대 설치 여부가 포함됨.
-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녀화장실 구분 없이 공중화장실등에 기저귀교환대 설치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하여 남성 육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성평등한 돌봄 환경 및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8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는 필요시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성평등한 육아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4
------------	-----

발의연월일: 2025. 8. .

발 의 자 : 이순우·이성수·정선희  
전승관·이규선 의원  
(5인)

## 1. 제안이유

최근 여성가족부에서는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기저귀 교환대 등이 남녀 화장실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을 발표함. 이러한 정부 기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차별 없는 육아 공간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성별에 관계없는 양육 환경 문화를 확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등 설치기준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

## 3. 개정안 :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청소도구함”을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청소도구 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p> <p>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p> <p>1. · 2. (생 략)</p> <p>3. 필요시 화장실 내에 <u>청소도 구함</u>,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p> <p>4. (생 략)</p> <p>② ~ ④ (생 략)</p>	<p>제8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p> <p>①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영유아용</u> <u>기저귀교환대, 청소도구함</u>---</p> <p>4.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